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6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김미애 · 성일종 · 강승규
김승수 · 김석기 · 박상웅
김상훈 · 이달희 · 이양수
이종배 · 김선교 · 강명구
김은혜 · 송석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관리방법”을 “제공·관리방법”으로 한다.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등에 대한 그 밖의 영향요인의 기여도 분석

④ 정보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그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3. (생략)</p> <p>③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u>관리방법</u> 등에 필</p>	<p>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u></p> <p>4. <u>기상요인 등 미세먼지등에 대한 그 밖의 영향요인의 기여도 분석</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정보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그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결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u></p> <p>⑤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⑥ ----- -----<u>제공·관리방법</u>-----</p>

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
-----------------------------	-----------------